

예산총칙

2014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803,169,849	174,095,095
일반회계	5,041,362,520	151,240,876
특별회계	761,807,329	22,854,220
공기업특별회계	319,336,154	9,580,085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319,336,154	9,580,085
기타특별회계	442,471,175	13,274,135
대학운영특별회계	9,684,763	290,543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	135,994	4,080
의료급여기금사업특별회계	396,769,250	11,903,078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31,896,041	956,881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985,127	29,554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특별회계	3,000,000	90,00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2014년도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2014년도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

제 5 조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5,348,158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14년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1,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